



행정안전부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특별교부세를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책수요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정목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내역(해당 시·도별 내역)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생활공간정책과장, 지역공동체과장, 혁신읍면동추진단장,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재정관리담당관), 부산광역시(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재정관리담당관), 광주광역시(예산정책관), 대전광역시(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 정 김민 교부세 정책관, 지방재정 정책관, 지방재정 경제실장, 차관 심보훈 장관 김부하

시행 교부세과 - 2.433 (2018. 12. 7.) 접수  
 우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6호(세종로,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62 전송 02-2100-3553 / ksman1010@mois.go.kr / 비공개(5)